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㉔ 이 법에서 “기업성장집합투자업”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㉕ 이 법에서 “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”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요건”을 “요건(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”를 “운용(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해할”을 “해칠”로, “이를”을 “각 호의 행위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동산집합투자기구”를 “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
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제229조제6호를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
2.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(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을 말한다. 이하 제3호 및 제5호에서 같다)에 투자하는 행위
3.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(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)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4.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
 - 가. 국채증권
 - 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
 - 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

라.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

5.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운용함에 있어서”를 “운용할 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

제83조제2항 중 “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”을 “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
2.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
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

2.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

제183조제1항 중 “혼합자산 및 단기금융”을 “혼합자산·단기금융 및 기업성장”으로 한다.

제229조제1호 중 “증권집합투자기구 : 집합투자재산”을 “증권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재산”으로, “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2호·제3호 및 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”를 “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주투자대상기업”이라 한다)에 금전의 대여,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
제5편 제3장 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·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·설립할 것
2.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·설립할 것
3.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
4.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
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·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(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·설립·해지·해산,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, 집합투자증권의 발행·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0조제3항 중 “90일”을 “90일(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

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)”로 한다.

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8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
산을 운용한 자

별표 1 제90호 중 “제81조제1항”을 “제81조제1항·제5항”으로 하고,
같은 표에 제2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4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
별표 2 제2호 중 “제81조제1항”을 “제81조제1항·제5항”으로 하고, 같
은 표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7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① ~ ⑳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<u>요건을</u> 갖추는 것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	<p>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① ~ ⑳ (현행과 같음)</p> <p>㉑ 이 법에서 “기업성장집합투자업”이란 <u>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㉒ 이 법에서 “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”란 <u>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요건(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<u>완화된 요건으로 한다</u>)</u>----- -----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

6의2.·7. (생략)

③ (생략)

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·나목,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(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)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설>

6의2.·7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 ① -----
----- 운용(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-----

----- 해칠 -----
----- 각 호의 행위를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-----
-----.

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

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제229조제6호를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

2.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(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을 말한다. 이하 제3호 및 제5호에서 같다)에 투자하는 행위

3.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(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)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4.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
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
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
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지 아
니하는 행위

가. 국채증권

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
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
권

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
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
채권

라.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
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
니하고 투자성이 낮은 것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금융투자상품

5.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
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
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
자하는 행위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
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

<신 설>

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83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

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(借入)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3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

제83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

-- 운용할 때 -----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1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

1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가액에 다음

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(생 략)

제18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) ①
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

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-----
--.

1.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

2.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

2.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8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) ①

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5. (현행과 같음)

6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: 집합
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
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
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
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
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
는 조합 등(이하 “주투자대상
기업”이라 한다)에 금전의 대
여,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
는 집합투자기구

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
구)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
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
한다. 다만, 전문투자자의 투자
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
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
그 설정·설립일부터 3년 이하
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
추어야 한다.

1.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
설정·설립할 것

2.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
집합투자기구로 설정·설립할
것

3.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
로 할 것

4.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
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금액 이상일 것

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
기가 설정·설립한 각 기업성장
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
수(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
증권 수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
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
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
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
구의 설정·설립·해지·해산,
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
율의 산정, 집합투자증권의 발

행·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0조(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) ①·② (생략)

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4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0. ~ 29. (생략)

제230조(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90일
(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) -----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444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9의2. 제8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

10. ~ 29. (현행과 같음)